서면답변서

소 속	평창군 의회	질문위원	유 인 환 위원
답 변 자	평 창 군 수 (지역도시과장)	답변일자	2007. 11. 30
회 의	제144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행정사무감사활동(제3일차)		

질문요지

○ 대화면 문화마을 옆 건축허가 관련 경작을 위한 진·출입로는 가능하다는 자료 제출

답변내용

○ 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 시행령 제43조 (녹지의점용허가 대상)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되므로 허가 가능함

° 시행령 43조(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)

-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

1.(생략)

2. 농업 또는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

3.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설치

4 ~ 7.(생략)

※ 주택 진·출입로가 허가 불가 사유

도시공원·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 제4조 규정에 의거 불가함

° 지침 제4조(녹지전용허가)

- 점용허가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

①(생략)

②녹지 안에서의 점용허가는 다음 기준에 적합한 경우 허가를 하여야 한다.

1. (생략)

2.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

가. 건축법상 도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 할 수 없다

3. (생략)